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(시행령 별표1의 3, 2024.7.17. 시행)에 따라 신설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·운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(안 제3조)

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·운용하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·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함

나.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일부 정비(안 별표 1의3)

외교부 주관 사회재난 유형 중 주한외국공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포함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별표 1의2에 따른 기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법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부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,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5도는 제외한다)
2.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(이하 “실무매뉴얼작성기관”이라 한다) 소속의 지방행정기관(제1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)
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청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교육지원청
4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

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산하 공공기관·단체

5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산하 공공기관·단체

6.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(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·단체·법인

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기관·단체·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·단체·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·고시할 것
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제1호부터 제29호까지,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,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,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, 제95호부터 제104호까지 및 제10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외교부	해외재난
--------	------

별표 1의3 제2호파목 재난관리주관기관란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파. 보건복지부[2]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군보건의료기관, 보훈병원, 경찰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제1항제2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)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별 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	제3조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) ① ----- 다 -----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법인-----.
<u><신 설></u>	1.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 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 기관을 말하며, 행정안전부 소 속의 이북5도는 제외한다)
<u><신 설></u>	2.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(이하 “실무매뉴얼작성기관”이라 한 다) 소속의 지방행정기관(제1 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 외한다)
<u><신 설></u>	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 도”라 한다)의 교육청 및 시· 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교육지원청
<u><신 설></u>	4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

<신 설>

<신 설>

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[별표 1의2]

재난관리책임기관(제3조 관련)

1. 재외공관
2. 농림축산검역본부
3. 지방우정청
4. 국립검역소
5. 유역환경청,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
6. 지방고용노동청

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
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
는 산하 공공기관·단체

5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
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산
하 공공기관·단체

6.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
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
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
를 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으
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
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
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
관(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
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
작성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
인정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
다)·단체·법인

<삭 제>

- 7. 지방항공청
- 8. 지방국토관리청
- 9. 홍수통제소
- 10. 지방해양수산청
- 11. 지방산림청
- 12. 시·도의 교육청 및 시·군·구의 교육지원청
- 13. 한국철도공사
- 14. 서울교통공사
- 15. 대한석탄공사
- 16. 한국농어촌공사
- 17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18. 한국가스공사
- 19. 한국가스안전공사
- 20. 한국전기안전공사
- 21. 한국전력공사
- 22. 한국환경공단
- 23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- 24. 한국토지주택공사
- 25. 한국수자원공사
- 26. 한국도로공사
- 27. 인천교통공사
- 28. 인천국제공항공사
- 29. 한국공항공사
- 30. 삭제 <2017. 1. 6.>
- 31. 삭제 <2017. 1. 6.>
- 32. 국립공원공단
- 33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34. 한국산업단지공단

- 35. 부산교통공사
- 36. 국가철도공단
- 37. 국토안전관리원
- 38. 한국원자력연구원
- 39.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- 40.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41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- 42. 산림조합중앙회
- 43. 대한적십자사
- 44. 「하천법」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
자(관리자를 포함한다)
- 45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0조에 따른 발전
용원자로 운영자
- 46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40조에 따
른 재난방송 사업자
- 47. 국립수산물과학원
- 48. 국립해양조사원
- 49. 한국석유공사
- 50. 대한송유관공사
- 51. 한국전력거래소
- 52.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- 53. 한국지역난방공사
- 54. 삭제 <2017. 1. 6.>
- 55. 한국관광공사
- 56.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- 57. 한국마사회
- 58.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
- 59.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
- 60.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

- 61.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
- 62.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
- 63.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
- 64.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
- 65.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
- 66. 「유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
- 67. 삭제 <2020. 6. 2.>
- 68. 삭제 <2020. 6. 2.>
- 69. 삭제 <2020. 6. 2.>
- 70. 공항철도주식회사
- 71.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
- 72. 여수광양항만공사
- 73.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- 74. 사단법인 한국선급
- 75. 한국원자력환경공단
- 76. 독립기념관
- 77. 예술의전당
- 78. 대구교통공사
- 79. 광주교통공사
- 80. 대전교통공사
- 81. 부산항만공사
- 82. 인천항만공사
- 83. 울산항만공사
- 84. 경기평택항만공사
- 85.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
- 86.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
- 87. 신분당선주식회사
- 88.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
- 89. 삭제 <2020. 6. 2.>

90. 삭제 <2020. 6. 2.>
91. 삭제 <2020. 6. 2.>
92. 삭제 <2020. 6. 2.>
93. 삭제 <2020. 6. 2.>
94. 삭제 <2020. 6. 2.>
95. 해양환경공단
96.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97. 국토지리정보원
98. 항공교통본부
99.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
100. 경기철도주식회사
101. 주식회사에스알
102.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
103. 서해철도주식회사
104.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
105. 제1호부터 제29호까지,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,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,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 및 민간업체.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·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 설>

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의3(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
구성과 운영) ① (생 략)
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

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하고
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
한다.

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
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
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
따라 민간기관·단체·법인을
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
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
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
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
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
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에 대하
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
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
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
기관·단체·법인을 재난관리
책임기관으로 지정·고시할 것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
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
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
한다.

제10조의3(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
구성과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(생략)

2.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
3. ~ 5. (생략)

③ ~ ⑬ (생략)

제22조(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시·도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⑬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) ① -----

----- 시
·군·구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의3]

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
재난관리주관기관(제3조의2 관련)

1. (생 략)

2.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

재난관리 주관기관	사회재난 유형
가.~다.	(생 략)
라. 외교부	1) <u>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화재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규모 피해</u> 2) <u>해외재난</u>
마.~타.	(생 략)
파. <u>보건복지부</u>	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) 「노인복지법」 제31 조에 따른 노인복지시 설 나) 「아동복지법」 제52 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 지시설 다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(「의료법」 제3 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 하는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한다) 2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 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하.~고.	(생 략)

[별표 1의3]

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
재난관리주관기관(제3조의2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

재난관리 주관기관	사회재난 유형
가.~다.	(현행과 같음)
라. 외교부	<삭 제> <u>해외재난</u>
마.~타.	(생 략)
파. <u>보건복지부</u> <u>지부[2]의</u> <u>경우에는</u> <u>관계 법령</u> <u>에 따라</u> <u>특수 목적</u> <u>으로 설립</u> <u>된 군보건</u> <u>의료기관,</u> <u>보훈병원,</u> <u>경찰병원</u> <u>및 근로복</u> <u>지공단 소</u> <u>속의 의료</u> <u>기관의 관</u> <u>리에 관한</u> <u>사무를 관</u> <u>장하는 중</u> <u>앙행정기</u> <u>관을 포함</u> <u>한다]</u>	(현행과 같음)
하.~고.	(생 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